

● 제285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3.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김태수 의원 발의]

의안번호 295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태수 의원 발의(찬성 11명)

나. 제출일자 : 2018년 12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18년 12월 28일

2. 제안이유

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근거를 명확히(제11조제5항)

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사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시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여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자 제안된 안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동 조례 개정안 제9조(아래 표 참조)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로 바꾸는 안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안임.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 ⑤ (생 략)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u>해촉</u> 할 수 있다. 1. ~ 5. (생 략)	제9조(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위촉 해제할</u> ---.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u>시설·장비</u>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 ----- ----- <u>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u> --. ② (현행과 같음)

나. 상위법과 비교

- 개정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의 주요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주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동 조례 개정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제5항과 이에 따른 각 호를 반영하여 신설하는 것인바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2(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정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지정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다만 동조례개정안 제12조의 경우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임. 그러나 상위법의 모든 사항이 해당 조항에 반영되지 않아 필요시 대안의 입법이

나 추후 입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겠음.

현행안	식생활교육지원법
<p>제12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시장은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① 학교는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을 비롯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식품첨가물의 영양성분 및 유해성분 2. 식품 및 농수산물의 생산·제조 및 가공 등의 과정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첨가물 3. 그 밖에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교재 개발, <u>과일·채소 등 간식, 시설·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등의 식생활 교육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u></p>

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종합의견

- 동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할 것임. 다만 개정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에 따른 집행부 사업계획의 일부변경(간식 등 지원) 등 집행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임.